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
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, 광고물 부착·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며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를 특별자치 시장 등에 위임하였으나 「전기사업법」 등 타법 인용사항에 대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. 한편 국가 유산청장은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대해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,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1호에서는 과태료의 부과·징수 권한 위임하면서 ‘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’로 한정하고 있어 궁능유적본부장이 법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정을 통해 법 제103조제5항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(안 제21조의2)

-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, 광고물 부착·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나.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(안 제21조의3)

- 문화유산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등에 위임하였으나 「전기사업법」 등 타법 인용사항에 대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

다. 권한의 위임(안 제42조)

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장의 공능유적본부장에 대한 권한 위임 사항 추가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1항제3호 사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자목 중 “행위”를 “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로 한다.

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“행위”를 “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로 하고,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한다.

제42조제1항제11호 중 “경우만”을 “경우 및 법 제103조제5항의 경우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의2(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)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1. (생략) 2. 삭제 3. 국가지정문화유산,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. ~ 바. (생략) <u>사.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</u> 아. (생략) 자. 광고물 등을 설치,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·③ (생략) 제21조의3(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)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	제21조의2(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) ① 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3. ---- -----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아. 현행과 같음 자. ---- ----- 행위 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1조의3(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) ---- ----- ----- -----

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삭 제

2. (생 략)

3.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. 다만, 해당 국가 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
가. ~ 다. (생 략)

라.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설비 및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
마. · 바. (생 략)

사. 수목의 가지 고르기, 병충해 방제,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 · 관리

아. (생 략)

4. · 5. (생 략)

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.
-----.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

----- 행위 중 국가유산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
마. · 바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아. (현행과 같음)

4. · 5. (현행과 같음)

6. 삭 제 제42조(권한의 위임) ① 국가유산 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궁능 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 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. 1. ~ 10. (생 략) 11.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·징수(위임받은 권한 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<u>경우만</u> 해당한다) ② (생 략)	제42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----- ----- ----- <u>경우 및 법 제103조제5항의</u> <u>경우에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901